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50079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73,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 (1) 소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달서지점장 및 E대리점 합동사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6년경 수십 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및 약관대출금 등 총 26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하거나 편취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C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 및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을 체결하였던 원고는 피보험자인 D에게 1997. 3. 13. 금 30,068,642원, 1997. 4. 18. 금 21,966,154원, 2000. 6. 19. 금 13,536,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09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3,5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1149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0.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9,239,480원 및 그 중 52,034,796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3)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2020. 12. 11. 현재 177,811,293원[= 27,759,366원(2011가소20920호 판결 채권의 원리금) + 150,051,927원(2012가단11499호 판결 채권 중 1997. 3. 13.에 지급한 보험금 30,068,642원에 대한 구상채권 원리금)]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3. 26.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딸인 피고가 있다.
- (2)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C과 피고는 2020. 3. 2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8. 피고 단독 명의로 2020. 3.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접수 제60375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03,2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취급지점 월배지점, 이하 'G'이라 한다)으로 된 2014. 11.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0. 6. 30. 피고가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4)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횡령 등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유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9,000,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에 대한 실 채무액은 86,000,000원이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23,000,000원(= 209,000,000원 - 86,000,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체결 당시 위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C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소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9,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실 채무액을 공제하면 공동담보가액이 12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상속지분비율(3/5)에 해당하는 가액은 73,800,000원(= 123,000,000원 × 3/5)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C의 상속지분 가액과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7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으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C의 재산상태, C와 피고의 관계, C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남동생 망 H이 2004. 12. 27. 사망하였을 당시 C과 망인 및 피고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비례 주장

피고는, C은 원고 외에도 I보험, J보험(채권양수인 K 유한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C의 총 채무액 중 원고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C의 상속지분 가액 중 75%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일반채권자가 존재하더라도 각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 만약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중복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 범위가 총 채권자들 중 원고의 채권액 비율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아파트 O동

[도로명주소]대구 달서구 P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 달서구 M 대 872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Q호 철근콘크리트조 59.9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8724분의 31.96. 끝.

